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항공기술교육원 운영 규칙(준칙)

제정 2021.06.29.

소관부서 : 산학협력단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」제4조에 따라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항공기술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.

- 1. 항공안전법 제 4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별표 12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준수(매학년 24명, 총 72명 운영)
- 2.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된 교육규정 및 훈련운영기준을 준수
- 3. 사업 운영 중 발생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인가 추진
- 4. 교육원 소속 교관 관리
- 5. 교육원 입과생의 수업, 출결 및 성적 관리
- 6. 국토교통부로 교육생의 입과 및 수료 현황 보고, 교수 요원의 현황 및 실기평가관 변동 사항 보고

제3조(원장) 교육원에 원장을 두되,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원장 변경시에는 규정변경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로 보고해야 한다. 또한 원장은 교육규정 제9조 책임관리자의 책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제4조(조직 및 기능) ①교육원에 주임교관, 학과주임교관, 실기주임교관 및 행정담당을 둔다.

②주임교관은 이 대학교 소속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

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교육규정 제10조에 명기된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주임교관은 학과주임교관 또는 실기주임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.

③학과주임교관과 실기주임교관은 이 대학교 소속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교육규정 제10조에 명기된 학과주임교관 및 실기주임교관의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④행정담당은 입과생 학사 관리, 학과 및 실습 일지 관리 및 교육규정 및 훈련운영규정에 보고 사항으로 명기된 내용에 대하여 기한 이내, 원장의 승인 후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(www.kaa.atims.kr)로 보고한다.

제5조(교관 등) ①교관 임용 자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 12의 9, 항공종 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라야 한다.

②원장은 인가된 수업계획에 따라 매 학기 교육수요에 따른 소요 교관 시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관 임용을 추진해야 한다. 교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요건을 보유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.

- ③원장은 신규임용교관에 대하여 교육규정 제11조에 따른 임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- ④교육원의 학사 관리 및 국토교통부 보고사항 처리를 위한 행정담당을 운영해야 한다.
- ⑤필요시, 교육원에 실습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원장, 주임교관, 학과주임교관, 실기주임교관 및 행정담당 등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운영위원은 이 대학교 소속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 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국토교통부 인가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3. 교육원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(방학 중 운영 관련)
- 4. 교육원 사업에 관한 사항
- 5. 교육원 교관 선임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방학학기 운영) ①정규학기에는 학교의 학사 운영 규정을 따른다.

- ②방학학기의 수업에 대한 비용은 입과생 자비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결정 운영한다.
 - ③매 정규학기 종료 후 연속하여 매 방학 시 5주 내외로 수업을 운영한다.
- ④방학학기에도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출결, 성적관리 및 기록 관리를 해야 한다.

제8조(세부지침) 기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